2024년 12월 1일 개정

승인일자 : 2024년 11월 29일

승인번호 : 자동차 24-45012-1-1

KB배달라이더 이륜자동차보험

약관

★ KB 손해보험





세상을 바꾸는 작은 노력! 'KB스마트 안내 수신 동의'를 통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KB배달라이더 이륜자동차보험 보통약관

- 목 차 -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KB배달라이더 이륜자동차보험의 구성	··· 4
제1조(용어의 정의)	4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및 가입대상)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 7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 7
제3조(보상하는 손해)	7
제4조(피보험자)	7
제5조(피보험자동차)	7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7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9
제7조(피보험자 개별적용)	9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9
제9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3	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 금)	9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10
제1절 자기신체사고	. 10
제10조(보상하는 손해)	. 10
제11조(피보험자)	
제12조(피보험자동차)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11
제13도(포증이지 않는 는데) 제1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11
제1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	11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12
제3권 모임음 모든 돈에 매성의 성구···································	·· 12
제16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2
세10소(모임급을 경구일 구 있는 경구)	· IZ
제1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제18조(제출 서류)	. 13
제19조(가지급금의 지급)	• 14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14
제20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14
제21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15
제22조(제출 서류)	· 15
제23조(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4조(보험금의 분담)	
제25조(보험회사의 대위)	
제26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2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17
제28조(공탁금의 대출)	- 18
제4편 일반사항	· 18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9조(보험계약의 성립)	· 18
제3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8
제3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19
제32조(청약의 철회)	. 19
제33조(보험기간)	. 20
제34조(사고발생지역)	. 20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 20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 21
제37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 21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22
제38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22
제39조(보험계약의 취소)	- 22
제40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22
제41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제41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22
제42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23
제43조(보험료의 환급 등)	- 24
제4장 그 밖의 사항	. 25
	- 25
제45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25
제46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제4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25
제48조(보험사기행위 금지)	25
제49조(분쟁의 조정)	26
제50조(관할법원)	- 26
제51조(준용규 정)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27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 37
<별표 3> 과실상계 등	40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41
∠변표 5 < 자기시체사고 지근기주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KB배달라이더이륜자동차보험의 구성

- 제1조(용어의 정의) KB배달라이더이륜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1)에서 정한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 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 함합니다
- 5. 무보험자동차2: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 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차량,「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 치,「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³) 포함(「대인배상Ⅲ⁴」가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표」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 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II」가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다시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의 「대인배상II」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관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기.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나 지수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 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¹⁾ 도로교통법 제5조괴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치등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괴로 질병 또는 악물미약 대 마 및 향장산성의품과 그 밖에 행정인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화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치등을 운 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²⁾ 무보현자동치상해에서는 대인배상1만 기업한 경우에도 무보현자동치에 해당합니다

³⁾ 공제조합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이 자동차사고 시에 공 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에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 예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전국택시 공제조합과 체결화 계약

⁴⁾ 대인베상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니다.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차: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 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 니다.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 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
-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자,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자)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제 148조(벌착) 및 제148조의2(벌착)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 의무보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유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 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 다.
- 13. 보험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

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 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 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하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77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8)

⁵⁾ 사실훈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간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로 함께 살며 생 계를 같이 하는 남녀 관계

⁶⁾ 에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 (라이다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시한 일반의류는 제외)

⁷⁾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⁸⁾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 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 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 합니다
- 19. 미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 및 가입대상)

-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KB배달라이더이륜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의 3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 1.필수보험 :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학)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니다
 - 2.선택보험: 필수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필수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 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보험에 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지동차사고로 다른 시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 배상책임보험이 하 「대인배상 I」이라 하며,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나.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 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1) 경우에 보상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요율 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보험료 = 기본보험료

구분	내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 ⑤ KB배달라이더이륜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배달 운전자'라 합니다.)

- 2. 위 '1.'의 배달운전자가 이용하는 이륜자동차는 보통약관 제1조(용어의 정의) 제10항의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배달운전자를 기준으로 피보험자동차는 한 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배달대행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배달대행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배달운전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제5조(피보험자동차)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동차는 제4조(피보험자)에 정의한 기명피보험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 된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
 - 7.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9.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에 해당 피보험자가 사용하기로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10.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가 배달대행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r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3.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4.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오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나.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라. 피보험자의 고용주9)
 - 2.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3.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지와 통행인의 의류 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 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4.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 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 니다.
- ④ 제①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7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②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 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7조(피보험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6조(보상 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1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10'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확정판결등11)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①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①항의 '미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하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하 비용
- 9) 플랫폼업자와 운전피보험자 사이의 중간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 10) 비용은 손해의 감소를 위해 타당하게 사용된 금액입니다. 지급보험금 산출식에 의해 계산된 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괴하다라도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보상해 드립니다.
- 11)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 을 말합니다.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①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 「대인배상」」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목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한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 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배상」: 1사고당 1억원
 - 2. 「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 사고당 5,000만원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 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0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 간 중 배달대행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¹² 그로 인한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기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제11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배달운전자로서 보 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12조(피보험자동차)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동차는 제11조(피보험

¹²⁾ 피보험자의 산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자)에 정의한 기명피보험자가 업무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로 보험증권 또 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 $^{\rm ct}$
-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 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 8. 피보험자가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에 해당 피보험자가 사용하기로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9.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의하 여 승인되지 않은 운전자가 배달대행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손해

제14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 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 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벌표's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상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자기신체사고」의 시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¹³⁾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 으로써 과실상계⁽⁴⁾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 다.
-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i)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¹³⁾ 공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및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 등

¹⁴⁾ 괴실성계란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지의 괴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지의 괴실을 참작하 는 것을 말한다다.

- ii)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i)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대인배상 포함)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ii)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iii)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단, 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은 금액은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업무상 재해 등)확인을 위해 보험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다만, '3' 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별표5> 자기신 체사고 지급기준상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 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 각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 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약자를 지정하 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 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16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1)로 인하여 죽거나다친(*2) 때

- (*1)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 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2)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 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7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①항 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15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

-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 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 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 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대인배상」、「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8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1. 보험금 청구서	0	0	0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0	0	0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0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0	
5.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o	0

제19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 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 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

¹⁵⁾ 이자 계산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에 대한 후 이 합산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 하는 이자계산 방법입니다. 예) 원금 100월/이자율 연 10%

⁻¹년 후 100원+(100원X10%=110원 -2년 후 110원+(110원X10%=121원

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 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 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 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 22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0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16

제21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¹⁷⁾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④ 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 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 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 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 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 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

¹⁶⁾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관자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의 주장또는 항변) 시항과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¹⁷⁾ 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는 지급한 금액이 한도 나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존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 및 피보 함자는 약관 제 42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에 따르는 의무사항으로서 그 권리(손해배 상청구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때에 필요하거나 유약한 비 용을 말했니다.

- 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 것으로 봅니다.
-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드립니다.

제22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 비하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0
2. 손해배상청구서	0	0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까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 . 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산하게 됩니다.)	0	0

제23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10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 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 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 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②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 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 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 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 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 을 지연하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¹⁸⁾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등과 같이 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충동하기 위하여 보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나에서 손하배 상액의 일부를 손해비상 청구관자에게 미리 지급해 주는 보험금을 말한니다.

동일하게 제22조(제출 서류)에서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24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8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괴하는 손해를 보상 합니다.

제25조(보험회사의 대위)

-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 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6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함 책임을 집니다.

제2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 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 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안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8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2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①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자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29조(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 료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 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33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0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19)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 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물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 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19) &#}x27;부본'이라 함은 원본과 내용이 동일한 문서를 말합니다.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 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한 때 보험계약자에게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²⁰⁾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④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 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 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 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청약의 철회)

- ① 일반금융소비자(1)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 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전문금융소비자2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 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²⁰⁾ 지필서명에는 날안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21) &#}x27;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지를 말합니다.

^{22) &#}x27;전문금융산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신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자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산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0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 산비지를 말합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④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봄니다.

제33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 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전6시부터 마지막 날 오전 6시 까지입니다.

제34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목적으 로 개인(신용)정보처리에 관해 제1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 며, 제2호의 경우에는 운전자 명세에 기재된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에 관한 사항
 -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로 배달대항 업무를 하는 자로서 운전자 명세에 기재된 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에 관한 사항
 - 3. 피보험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에 관한 사항과 이 보험계약을 제외한 피보 험자동차에 적용되는 이륜자동차보험계약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2조(보험회 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42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①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제4조(피보험자) 및 제11조(피보험자)에서 정한 피보험자 또는 피보 험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사실
 - 2. 제5조(피보험자동차) 및 제12조(피보험자동차)에서 정한 자동차가 변경된 사실
 - 이 보험계약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동차 용도가 유상 유송으로 변경된 경우, 그 사실
 - 4.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시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니다

-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마. 피보험자동차에 가입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관한 사 항
- 바. 배달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배달대행 요청업체, 배달 요청시간, 배달 장소 등)
-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5.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험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제38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계약자
 -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 약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라 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23)에게 이전합니다.

제39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²⁴⁾

제40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 력을 상실합니다.

제41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계약자는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²³⁾ 상속에 관해 민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을 말합니다.

²⁴⁾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제①항, 제②항의 해지 통보는 해지하고자 하는 일자로부터 3영업일 이전에 하여야 합니다.

제4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 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 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①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①항 및 제③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3조(보험료의 환급) 제 ③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①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25로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 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 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 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 이 지난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 가입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 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3.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위험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②항,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 등에 따라 추가보 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

²⁵⁾ 중대한 괴실이란 주의의유(반이 현재한 괴실 즉 국히 근소화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간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간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 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 4.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하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①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 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3조(보험료의 환급 등)

-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 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 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 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 회사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 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제3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인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41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 이후의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보험계약이 해지(제41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 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보험회사가 제39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42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 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⑥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4조(약관의 해석)

-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 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 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 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5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 ① 보험회사는 제37조사고가 발생한 때 의무) 제①항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 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을 해지한 때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6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7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8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9조(분쟁의 조정)

-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 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0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1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 니다.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26)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름.						
3. 상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 하여 산정(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 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 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압기능연한까지 월수 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다,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 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 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자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신 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						

²⁶⁾ 지급기준의 연령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한 만연령으로 합니다

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내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 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 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볿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

- 〈산식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²⁷⁾ - (연간수입액×기준경비 율²⁸⁾) - 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방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수경비율29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되 경
 - 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
 - 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 을 적용함.
 - 고 하다.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 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 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

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 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 종사원임금)/2

* 월 임금을 산출할 경우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 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

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 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 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 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 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 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 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 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 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 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 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힐 -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없는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자업소득차 일용근로자 임금

교육교로/기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 나)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중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 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토계번 제17조에 따라 충사자는 충선분 대한건설법과, 정기관(공사부분 대한건설법과,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 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
-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 19세 이후는 일용근로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 로자 임금
-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 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 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 (6) 외국인
 - (가) 유직자
 -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 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 한 금액
 -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 다. 생활비율: 1/3
-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 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하며 피해자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여촌 발전 기본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기대해자가 객관 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 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정함

_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웤수>

10Em 10 - Hill - H	1021/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 (5) 외국인

(7)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 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의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 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 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 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 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소득기순을 석용함. (C)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 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 를 말한니다.
 -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 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i=5/12%, n=취업가능월수

- 27) 메압비용(재한의 매입 기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양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암차료, 인건 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급여, 등을 말합니다.
- 28)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용
- 29)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나. 부 상

고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보장합시행당.[일표 1]에서 장안 장애급일 보장안도 내에서 시급함.
항목	지급 기준
1.적극	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
손해	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 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 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 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 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 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 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 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 나한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 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당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량 〈별표!〉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2. 위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급별	인정 액	급별	인정 액	급별	인정 액	급별	인정 액
	1 2 3 4	176 152	7	50 40	10 11	20 20		15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 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 손해

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 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 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 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 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100

- 나. 휴업일수의 산정
- (1) 휴업일수의 산청: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 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 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 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 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 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 (1) 유직자
 -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 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 소액으로 함.
 - (2) 가사종사자
 -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중사하는 자로 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 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 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
-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 ~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 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 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4. 간병 비

다. 지급 기준

-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 험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 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원기간을 인정함.
-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 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 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 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배상금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	---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삼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동차손해배상	J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목	지	급 기준
1. 위 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나. 지급기준 : 노동능 (2)항에 의해 산정 지급함.	피해자 본인 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1) 노동능력상실률 ⁽ (가) 후유장애 판정	기 50% 이상인 경우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 ,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다) 상기 (가), (나) ⁰	네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
	세 미만(상실률 x	
	세 이상(상실률 x	
	우 ³ 연령	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 되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 ^C	기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35% 이상 45% 미만	400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4% 이상 20% 미만	160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0 초과 5% 미만	80 50
	유장애 위자료를	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 강.
2. 상 실 수 익액	│ 륰과 노동능력상식	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 (함.(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 : 한도로 함)
	┌─ 〈산식〉 ──	
	리 력상실일부터 보험	·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 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 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1) 유직차
 - ·/ (가) 산정대상기간
 -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 간으로 함.
 -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 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2) 가사종사자
 -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 다. 노동능력상실률

때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30에 따라 일반 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 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 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 가호비

- 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 물인간상태 판정을 받은 차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 물인간상대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 상 다른 사람의 개호31를 요하는 자
 -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 보지는 못한다.
-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 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 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 는 차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 하다.
 -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다)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 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 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 비용	기: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대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소상이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이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외창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품질인증부품이란「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 (2) 열처리 도장료 수리할 때 얼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 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기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

³⁰⁾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입니다. 직업과 장애부위의 관련표로 신체의 장애를 백분율 (%로 평가하는 방법(예. 식물인간의 경우 100% 장애율)입니다. 280여종의 직종별 계 수 및 각종 신체부위 등이 연관되어 수천가지 이상의 상실율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 되어 있습니다

³¹⁾ 장해로 인하여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를 한도로 함 (기) 내용여수(**)가 지난 경우 (나) '대우(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 동차 (다) '호탈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기액표」에서 정하 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 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안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 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本) 日本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 ⁽¹⁾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²⁾ .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다면,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여 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 ⁽³⁾ 의 대여자동차를 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 ⁽³⁾ 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 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 경을 말합니다. (*3)"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발표 가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중(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 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 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호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 (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	

동급의 최저요급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은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일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가 가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경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자급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안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장한 금액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 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7.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우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 (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이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5. 영업 가. 지급대상 소与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4. 휴사료	기: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1, 20 12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 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 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
	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 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 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3> 과설	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 &	상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 「대일배상 I」에 이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다 이 되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한 은기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 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안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및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1)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를 보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급별 구분 중 12급 내기 14급의 상해를입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한도를 초과할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의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구할 수 있음. (*1) "차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의한 자동차(이름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하며, 차

	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가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 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 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 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 용항.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 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 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 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동 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가. 기왕증(*1)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I. / EAL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1)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 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 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 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 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 , 0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등급	보험가입금액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1,500만원 800만원 750만원 7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50만원	89 10 11 12 13 14 14	180만원 140만원 120만원 120만원 80만원 50만원

쥐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2)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쥐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쥐 보험계약(출이율은 보험/발원이 공사하는 보험계약(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비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상해 급별	보험 기입금액	상 해 부 위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 다)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삼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흥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착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1급	3,000 만원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착수 손상을 동반한 착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호전성) 골절 8. 상완신경충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을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본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 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 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해당한다) 14. 화상.좌창.괴시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 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
		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그 자기의 이탈보이지도 제품 소수의 발생되는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2급	1,500 만원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 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 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당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암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 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괴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히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 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 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 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 관절부 이단을 포함하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3. 네되고 그는 6일 본단기되고 본 부 본 본 기계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 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흉부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 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해당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4급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 마워 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해당한다) 11. 요골 워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공절을 말하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 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 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해당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 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 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 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 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900 마워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급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 하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 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 당하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700 마워 6급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 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 ~ 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 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아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7급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 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 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산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 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8급 300 만원 14. 다발성 수지골 골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바화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 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 ~ 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한 상해

시행한 상해

뫄	240 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녹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흥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흥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곤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그 밖에 명기되지 않은 건얼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귈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양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i>2</i> 00 만원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건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역기 이상 10차 이하의 차과보절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 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20 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 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14급	50 만원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비고

영역	냬용
굔	1.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에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이하 "병급" 이라 한다) 2.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 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3.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의 우각 선택하여 함께 반
	영한다. 4.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일 때 소아로 인정한다. 5.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 피부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하여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댞	1.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식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2. 4급 이하에서 의식 이외에 뇌신경 손상이나(국소)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 상향조정 가능하다. 3.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 ~ 12점, 경도는 13 ~ 15점을 말한다. 4.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forws))은 경도로 준용한다. 7.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에 준용한다. 8.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에 준용한다. 9.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만 적용한다.
· 흥. 복부	1.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조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 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 세가지 요구 충 족 시 인정한다.
착추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착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약화된 경우는 9급에 준용한다. 착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에 준용하다.
	4 미디즈중크이 청소소사에 조유하다
	4. 마이팅우군는 역구는당에 논등한다.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판고정술을 사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다.
	2. 2급구터 1급까시의 경에 대형 중 개항성 물을 보는 물꾸에서 가입될도 2 - 형 ()사개비사이 길이가 1cm ()사이 경으로 만하다이 개비서 고전 따느
	하시아내아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 기도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 존적 치료를 사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하다.
	식용안나
	6.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7 이제다는 이외 제다에 주셨다.
	7. 아침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8. 관절 이단의 경우 상위부 절단을 준용한다 9.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
상	9. 골로 시호로 인스킨로 시원을 시청을 '승구 에어가다니 글로백 중국인 증납 을 준용한다. 10. 시대 그 또는 것이 보면 파여로 변주적으로 발근하고 모으고 또는 것이 다.
뿅	3. 글을 자꾸보고 나이고를 자근을 자음을 6가 에어꾸기다 글로네 중을한 6남 을 준용한다. 10.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 순 염좌(12급)을 준용한다. 11.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재치한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다. 13. 수술을 시행하시지 주요 관점 탈구는 해당 관점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
	- 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4.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2. 보존적으로 지료한 사시 수요반을 끌절 및 탈구는 해당관열의 끌절 및 탈구보가 3등급 낮은 등급을 접용한다. 13.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14.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향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15. 분쇄 골절을 항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이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16.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17. 근 건 인대 파멸이라 함은 와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해한 2층이에 와전 파멸을 가려면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해한 2층이에 와전 파멸을 존용하다.
	17. 근 것 인대 파멸이라 힘은 완전 파열을 의미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준용한다. 18. 나다고 과적 존 발명하시 서베트 게네너 버드로 며시났다 아오 나다고 과적
	10. 시기를 골을 이 물이득한 아이아라이지 글로 6시에게 많은 시기를 골을 (건얼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한하 경우는 하당 부위 골절 항에 작용하다.
	19.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소이의 경우, 성이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정판
	조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소직 조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21.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화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17. 근 건, 인대 파딸이라 함은 완전 파딸을 의미하며 부분 파딸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딸로 준용하다. 18. 사지물 골절 중 불명확한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물 골절 (검열골절을 포함한다는 제불안전골절에 준용한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하당 부위 골절 향에 적용한다. 19. 사지물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20. 소이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순시이 봉반된 경우와 연박소지 순성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21. 주요 동백 또는 정맥 패얼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하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라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 발성 혈관 순상이란 2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라 소상을 의미한다.
	1. 상부관설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2. 호전근개 파열 가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조건 기계된 탄구에나 제비를 타고 하는다 0.1c 세년 1명 베일이 바
상지	3. 6급의 선원을 할구에서 세달성 할구를 소대할 수 있는 애무약의 영연이 영 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하다. 4. 거년 세고가 개점 타기 개점나 다느 거년 세고가 이대 파여오 거부 세고이
	일당 열단 관망이던 2부위 이상의 구요 공식 또는 상식의 관성을 악기한다. 1. 상부관점도 파열은 외상성 파열한 이장하다. 2. 회전근가 파열 개수에 따른 처등을 두지 않는다. 3.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계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 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4. 건봉 쇄골간 관점 탈구 관점당 또는 건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건봉 쇄골인 대 및 오구 쇄골인때인 완전 파열로 포전적 치료 관시항한 경우 2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 분시항한 경우 9급을 작용하고 단순 영화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1. 연호 참보자 교적 보면 사용대 교적 드에나는 변화되다 있는다.
	2. 너를 함을 내를 말라고 보고 말로 프로그 아이다. 3. 슬펀전 삼시인대 파업은 전후방 산자인다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축부인대 동시 파열 삽자인대와 축부인 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4.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일은 족관절 축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의 등급을 준용한다. 5. 대답된 또는 경비달의 건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
쟤	대파열 반활성'연골판 파열"등은 병급한다 4.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했하 경우
	의 등급을 준용하다. 5.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
	5. 다토탈 도 스시크의 건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해 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을 준용한다. 6.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에 준용한다.

7. 고관절이란 대태골두와 괄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 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8.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괄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9.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점 슬관점 족관점을 말한다 10. 슬관절의 전방 또는 희방 십자인대의 피열은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하거나 완전 파열에 준하는 파열에 적용한다 11.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 우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비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애		선 (사용사단에 따라고 다시요요 사라고 세계요 사라고 되었다)			
장애 걥별	보험 가입금액	신 체 장 해			
1급	1약천 만원	신 제 상 해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산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이야 하는 사람 4. 홍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이야 하는 사람 5. 반산매박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충지면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디리를 무릎구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디리를 무릎구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디리를 모른 거로 이상의 보이어 있을 사람			
2급	1억35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모과절 이상의 부위에서 있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된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있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이야 하는 사람 6. 흥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3급	1억천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시람 2 말하는 가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가능을 완전히 잃은 시람 3.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 전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알생동안 노무에 종시할 수 없는 사람 4. 흥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알생동안 노무에 종 사 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기력을 모두 잃은 시람			
4급	1억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가능과 음식물을 씹는 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전부의 결소도가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면걸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과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소의 소기력을 모두 제대로 모산게 된 사람 7. 도 많은 소기록을 모두 제대로 모산게 된 사람			
뎗	9,000 만원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터로 된 시람 2. 한 필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필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림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홍복부 장기의 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7,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라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라이어 모두 구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나하면 큰 말소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구가 잔혀 들리지 아나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트이 턴 이상의 가간에서는 보통의 말소로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착주에 뚜렷한 기층이나 뚜렷한 운동장아가 남은 사람 6. 한쪽 말이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소의 5개 관기록을 잃거나 한쪽 손의 양자손기록과 둘째손			

		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000 만원	1. 한쪽 눈이 살망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허로 된 시람 2. 두 귀인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시람 3. 한쪽 구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라 신경제통의 가능 또는 정신가능에 장에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시하지 못하는 사람 5.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에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시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순기라의 둘째순기라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 의 암자순기라이나 둘째순기라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순기라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라 또는 엄지순기라과 둘째순기라을 포함 하여 4개의 소기라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일을 소합을 속한 속으로 양의 나라 무슨한 우리에 나라 있는 사람 10. 한쪽 발을 촉근중속과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0. 한쪽 발에 가만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기라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1. 두 발의 발기라를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홍타가 남은 사람 13. 잉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 만원	1. 현쪽 눈의 시력이 002 이혀로 된 사람 2. 착략에 운동하아가 남은 사람 3. 현쪽 소의 엉자는가든의 유명 4. 한쪽 소의 악자는가르마 둘째는가든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소의 악자는가르마 둘째는가든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소의 악자는가르아나 둘째는가리를 포함하여 3개 이 상의 소가든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타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말의 3대 관절 중 1개 관월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팔에 가단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말의 발기름을 모두 있는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급	3.8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이합차 또는 사이경순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까줄에 뚜렷한 결순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순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결산이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인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인 청력이 되는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인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나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인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금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인 청력은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당지는건들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당지는건들을 잃은 사람 11. 한쪽 살의 남기라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라을 잃은 사람 11. 한쪽 살의 남기라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라을 잃은 사람 12. 함쪽 발의 엄지받기라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기라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남기라를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각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산경계통의 기능 또는 장난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사람
10급	2,7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허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차고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4. 한쪽 귀의 정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냐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정력이 모두 1미턴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I 아이트드 데 TKMI 이트 시라 I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자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와 2개의 소기락을 잃은 사람
		1.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
		락을 포함하여 2개의 존기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자손기락과 둘째손기락와의 3개의 손기락을 제대로
		모사게 되 시란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TIU. 연락 클리 3대 전달 중 1개 전골의 기능에 무엇인 경에게 급근1
		시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은 사람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
		2 두 눈이 눈까물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까물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3. 안쪽 문의 문서물에 뚜렷한 결혼이 담은 사람 4. 하쪽 귀의 청력이 40세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아이들지 못하게 된 사람
	2.300	
11급	만원	6. 적주에 기영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현쪽 손의 기운데스기라 또는 넷째스기라을 잃은 사람 8. 현쪽 손의 둘째스기라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참지손기라과 둘째소기라의 2개의 소기라을 제대로 못쓰게 된
		9. 한쪽 발의 엄자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홍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차과보철을 한 사람
		1 하쪽 누이 근전비사 기능에 뚜려하 장애가 있거나 뚜려하 우동
		· 장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늦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고보철을 한 사람
		2 한쪽 나의 눈꺼물에 뚜렷한 운동이아가 남은 사람 3. 개 이상의 치이에 대하여 치파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급 홍골 늑골 견갑을 또는 괄반물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
127	1,900 무워	6.
12급	만원	8. 장권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학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담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 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1 하쏲 박이 언제박가란 또는 그 이이 4개이 박가란을 제대로 보1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보에 융터가 남은 사람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사이협착 또는 사이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물의 일부에 결손이 남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1,500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고보철을 한 시람 5. 하쪼 소이 새까소기라운 있으 시라
13급	1,500 만원	6. 한쪽 손의 암자산기락 마다빠의 일부를 잃은 사람
		6. 한쪽 논의 양자는가로 마다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물째손가락 마다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물째손가락이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마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타미터 이상 짧아진 시람 10. 한쪽 발의 기운데발기락 이하의 발기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11. 한쪽 빌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빌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아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 게 된 사람
14급	1천 만원	1. 한쪽 눈의 눈까물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이에 대하여 치미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들지 못하게 된 사람 4. 필의 노출된 만에 손바닥 크기의 흥타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만에 손바닥 크기의 흥타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가는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와의 손가락 마다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속으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와의 손가락 판매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대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기 된 사람 기 된 사람

비고

- 1. 진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 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소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하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 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 라막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에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 태를 말한다.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 는 종시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 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노 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1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로 종시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經濟)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홍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 은 경우를 말하다.
- 15.형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증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정도만 남 은 경우를 말한다.
- 16.'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 의 홍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기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 를 말한다.

KB배달라이더 이륜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1.	대인배상I지원 특별약관	55
2.	단체취급 특별약관	55
3.	단체계약 특별약관	56
4.	배달대행 업무기간 특별약관	58
5.	보험금 분담지원 특별약관	58
6.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59
7.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60

1. 대인배상 I 지원 특별약관

제1조(기업대상) 이 특별약관은 대인배상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 하여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 생하였을 때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위 제①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공제계약을 포함)가 이 특별약관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대인배상 I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 특별약관 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 을 보전하여 드립니다. 단, 보통약관 제9조심주운전, 무먼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회사에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차)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동 차는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와 제5조(피보험자동차)에서 정의한 내용과 같습 니다

제4조(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는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로 합니다.

- ①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단,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동 금액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 인배상 I 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미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목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되는 지급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사고부담금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규약에 따른 단

체를 말합니다)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 제1종 단체 :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에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제 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한니다.
- 다 이 다 이 하다 한 나 한 보이 보다 한 다 하다. 이 사회 등 동업자단체 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 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 담하여야 합니다.
-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계약자)

...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 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를 말하며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운전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알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 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 다
 -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 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 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 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미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현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 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 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 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 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 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 하여 드립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

- 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보험증권의 발급)

-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②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배달대행 업무수행기간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단체취급특별약관 또는 단체계약특별약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기간 적용 등)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중 이 특별약관에서 정의한 배달대행 업무수행 기간 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배달대행 업무수행 기간 외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용어풀이>

배달대행 업무수행 기간이란 배달운전자가 배달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배달대행업무를 하기로 의사 를 밝힌 날인 1일을 말합니다. 1일이란 배달대행업무를 위해 의사 를 밝힌 날의 오전6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 보험금 분담지원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통약관에서 가입한 담보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0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통약관과 보험계약 및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 복되는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 제11조(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피보험 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하 '다른 보험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하여 보통약관 제24조(보험금의 분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다 응과 같이 적용합니다.
- 1. 보험회사가 보험금 선지급시 다른 보험계약에 분담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2. 다른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선지급시 보험금 분담적용 규정에 따라 보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분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다른 보험계약 에서 지급한 분담보험금도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손해액을 보전시킴으로써,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서 사고에 따른 불이 익을 받지 않게 합니다. 이 경우 손해액 산정시 보통약관 제9조(음주운 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고부담금은 공제하며, 사고부담금 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3. 위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액이 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분담보험금 지급 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과 보험회사의 분담보 험금의 차액을 다른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분담보험금으로 지원하여 손해액을 보전하여 드립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시기 이전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험회사가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시기 이 전에 보험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서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험료의 분할 납입주기 및 납입약정일
 - 2. 위 제1호에서 정한 약정일에 납입하는 보험료의 규모
 - 3. 위 제1호에서 정한 납입주기에 따른 보험료정산일
 - 4.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보험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시기 이후에 보험계약자와 협의를 통하여 위 제②항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부)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시기 이전에 예상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 액을 보험회사로 납부해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시기 이후에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 특별약판 제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②항 제1호에서 약정 한 납입약정일에 예상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②항 제1호에서 약정한 납입약정일의 5영업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알려드립니다.

제4조(보험료의 정산)

- ①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②항 제3호에서 정한 보험료 정산일에 보험계약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그 차액을 휘급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료의 납부)에 따라 보험계약자

가 납입한 예상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이 보험계약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회사에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②항 제3호에서 정한 보험료정산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료 정산에 관한 특별약정) 제②항 제3호에서 약정한 보험료정산일의 5영업일 이전까지 위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5조(납입최고 및 계약의 해지)

- ①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제3조(보험료의 납부) 및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따라 납입약정일 또는 보험료정산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 험회사는 해당일로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 을 납입 최고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납입최고기간내에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료의 납부) 및 제4조(보험료의 정산)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은 납입최고의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①항에 의한 납입최고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자는 그 전자문서 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험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납입최고기간을 설정하여 제①항에서 정한 내 용을 서면 또는 전화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④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43조(보험료의 환급 등)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신용카드 및 전자결제 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계약자 명의의 결제수단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보험계약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업종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 및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결제수단으로 보험료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를 제공하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사고 결제수단 계약)

- ① 사고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 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①항의 사고 결제수단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1. 유효기간이 지난 결제수단
 - 2. 위조 변조하거나 무효 또는 거래정지가 된 결제수단
 - 3. 보유자와 이용자가 상이한 결제수단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KB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 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3조에도 불구하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수 있다.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 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이에 따라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 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 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 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 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 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 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총액정보등 (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2항 참조)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KB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KB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KB국민은 행(은행 및 외국환업), KB증권(금융투자업), KB손해보험(손해보험업), KB국민타드(신용카드업), KB라이프생명(생명보험업), KB자산운용(집합투자업,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 KB캐피탈(리스, 할부금융업), KB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KB신용정보(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KB데이타시스템(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Ⅲ.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KB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신용위험관리 등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 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 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 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 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1회 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의 자기정보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

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 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 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 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KB금융그룹

KB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증권	고객정보관리인
KB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KB국민카드	고객정보관리인	kb라이프생명	고객정보관리인
KB자산운용	고객정보관리인	KB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KB부동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KB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KB인베스트먼트	고객정보관리인	KB데이타시스템	고객정보관리인
KB신용정보	고객정보관리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 는 것 및 2)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 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 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1544 0114
- ·서면: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 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신청한 때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 전화 : 🏗 1544 0114
 - . 인터넷: http://www.kbinsure.co.kr
 -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 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 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 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전화 : 23 1544 - 0114

. 인터넷 : http://www.kbinsure.co.kr

. 서면 :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빌딩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 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코리아크레딧뷰로㈜: ☎ 02)708-6000

인터넷 www.koreacb.com

.한국신용정보㈜ : ☎ 1588-2486

인터넷 www.mycredit.co.kr

한국신용평가정보㈜ :

☎ 1600-1533 인터넷 www.creditbank.co.kr

바. 본인정보의 유출시 피해보상 요구

KB손해보험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사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전화	02)6900-2114	(02)3702-8679	(국번없이)1332		
주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98, 9층 정보보호파트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